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국립정치교육원 설립에 대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6년 8월 2일

청 원 인

성 명 : 김영진

주 소 :

전화번호 :

소 개 의 원 : _____ (인) 외 _____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김영진
건명	국립정치교육원 설립에 대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6년 8월 2일
<p>소개의견</p> <p>청원인 김영진 외 21명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입니다. 제 14회 정기회의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국립정치교육원 설립에 대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입니다.</p> <p>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건강한 민주시민육성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형식의 정치교육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기에 본 법안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등의 특정세력에 의하여 편향된 정치사상이나 이념이 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성을 가진 특정기관의 총괄적인 교육기획과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치교육이 다원적 교육주체에 의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요구합니다.</p> <p>청소년 의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p> <p>교육기본법</p> <p>제 17조7(정치의식 함양)</p> <p>① 국가는 자율적이고 건강한 민주시민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치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하며, 이 기관의 명칭은 ‘국립정치교육원’이라 칭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치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교육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 기관은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일정한 자치권을 보장받는다. 2. (역할) 국립정치교육원은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아 정치교육을 실현하는 정당 산하기관, 시민단체, 연구단체, 각종 조직 등에 대한 금전적 지원, 물적 지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이념의 홍보, 시민의 정치참여 촉진, 정치교육 담당기관 간의 협조체제 형성, 정치교육의 학문적 검토, 정치교육 담당자의 연수 등을 수행한다. 3. (지원 단체의 의무) 국립정치교육원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교육대상자에게 정치적 사상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 21조 1항(표현의 자유)에 의거하여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또한 이 단체는 ‘배우는 자는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해관계 상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의 원칙을 지키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의무를 지닌다. 	

4. (지원 중단) 지원단체가 3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립정치교육원은 그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5. (감독) 국립정치교육원은 다음 목에 따라 행정자치부 감독 위원회, 국회의원 감독 위원회, 외부의 학문적/과학적 자문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 가. 행정자치부 감독 위원회는 대통령령에 따라 감독관을 파견한다.
 - 나. 국회의원 감독 위원회는 국회의 각 정당 의석수의 비례하여 감독관을 파견한다.
 - 다. 외부학문단체의 감독위원회는 국회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승인 하에 감독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정당 산하기관에 대한 조항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 정당 산하기관의 경우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정당 산하기관은 모 정당과는 다른 독자적인 재정구조와 인사구조를 갖추도록 국립정치교육원에 의해 관리되며 정당으로부터 직접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다.
3. 정당 산하기관은 정치교육을 위한 지원금을 본 정당에 지원해서는 안 된다.
4. 정당 산하기관은 정당의 이념을 선전하고 본 정당과 합동으로 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본 정당의 특정 후보를 지원할 수는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선거운동기간 내에 정치교육을 실시하도록 제한 받는다.
5. 정당 산하기관은 국회 의석에 따라 재정 지원의 정도가 결정된다.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눈부신 경제성장과 더불어 발전되어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른 선진국들의 민주주의 역사와 비교했을 때 60여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60여년의 기간 동안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대한민국 사회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시민들에게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의 성숙 및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 내에는 시민들의 힘으로 제거해야 하는 여러 정치적 악습과 비 민주주의적 관행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대다수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민주사회에 대한 의식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여러 악습과 관행을 지양하고 대한민국이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써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들의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계몽이 필요하며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건강한 민주시민의 육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본 법안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골자

현행 교육기본법에 제 17조7(정치의식 함양)을 신설한다.

제 17조7(정치의식 함양)

① 국가는 자율적이며 건강한 민주시민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치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하며, 이 기관의 명칭은 '국립정치교육원'이라 칭한다.

1. (자치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교육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 기관은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일정한 자치권을 보장받는다.
2. (역할) 국립정치교육원은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아 정치교육을 실현하는 정당 산하기관, 시민단체, 연구단체, 각종 조직 등에 대한 금전적 지원, 물적 지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이념의 홍보, 시민의 정치참여 촉진, 정치교육 담당기관간의 협조체제 형성, 정치교육의 학문적 검토, 정치교육 담당자의 연수 등을 수행한다.
3. (지원 단체의 의무)국립정치교육원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교육대상자에게 정치적 사상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 21조 1항(표현의 자유)에 의거하여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출할 수 있으며 '배우는 자는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해관계 상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의 원칙을 지키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4. (지원 중단) 지원단체가 3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립정치교육원은 그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5. (감독) 국립정치교육원은 다음 목에 따라 행정자치부 감독 위원회, 국회의원 감독 위원회, 외부의 학문적/과학적 자문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가. 행정자치부 감독 위원회는 대통령령에 따라 감독관을 파견한다.

나. 국회의원 감독 위원회는 국회의 각 정당 의석수의 비례하여 감독관을 파견한다.

다. 외부학문단체의 감독위원회는 국회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승인 하에 감독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정당 산하기관에 대한 조항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 정당 산하기관의 경우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정당 산하기관은 모 정당과는 다른 독자적인 재정구조와 인사구조를 갖추도록 국립정치교육원에 의해 관리되며 정당으로부터 직접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다.
3. 정당 산하기관은 정치교육을 위한 지원금을 본 정당에 지원해서는 안 된다.
4. 정당 산하기관은 정당의 이념을 선전하고 본 정당과 합동으로 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본 정당의 특정 후보를 지원할 수는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선거운동기간 내에 정치교육을 실시하는데 제한 받는다.
5. 정당 산하기관은 국회 의석에 따라 재정 지원의 정도가 결정된다.

-신구문 대조표-

현행	개정문
<p>제17조의6(평화적 통일 지향)</p>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6.5.29.]</p> <p><추가></p>	<p>제 17조7(정치의식 함양)</p> <p>① 국가는 자율적이며 건강한 민주시민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치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해야하며, 이 기관의 명칭은 ‘국립정치교육원’이라 칭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치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교육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 기관은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일정한 자치권을 보장받는다. 2. (역할) 국립정치교육원은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아 정치교육을 실현하는 정당 산하기관, 시민단체, 연구단체, 각종 조직 등에 대한 금전적 지원, 물적 지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이념의 홍보, 시민의 정치참여 촉진, 정치교육 담당기관간의 협조체제 형성, 정치교육의 학문적 검토, 정치교육 담당자의 연수 등을 수행한다. 3. (지원 단체의 의무)국립정치교육원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교육대상자에게 정치적 사상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 21조 1항(표현의 자유)에 의거하여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출할 수 있으며 '배우는 자는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해관계 상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의 원칙을 지키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4. (지원 중단) 지원단체가 3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립정치교육원은 그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5. (감독) 국립정치교육원은 다음 목에 따라 행정자치부 감독 위원회, 국회의원 감독 위원회, 외부의 학문적/과학적 자문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가. 행정자치부 감독 위원회는 대통령령에 따라 감독관을 파견한다.

나. 국회의원 감독 위원회는 국회의 각 정당 의석수의 비례하여 감독관을 파견한다.

다. 외부학문단체의 감독위원회는 국회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승인 하에 감독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정당 산하기관에 대한 조항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 정당 산하기관의 경우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정당 산하기관은 모 정당과는 다른 독자적인 재정구조와 인사구조를 갖추도록 국립정치교육원에 의해 관리되며 정당으로부터 직접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다.

3. 정당 산하기관은 정치교육을 위한 지원금을 본 정당에 지원해서는 안 된다.

4. 정당 산하기관은 정당의 이념을 선전하고 본 정당과 합동으로 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본 정당의 특정 후보를 지원할 수는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선거운동기간 내에 정치

교육을 실시하는데 제한 받는다.

5. 정당 산하기관은 국회 의석에 따라 재정 지원의 정도가 결정된다.

청원인 성명 :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